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고시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서식을 규정함

나.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824, 3825(팩스 044-201-5582)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